

근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질권자인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채권자”라 합니다)는 채무자 및 근질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약)과 이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근질권설정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표시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 및 음영표시란은 근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질권자 성 명:

주 소:

채무자 성 명: (인)

주 소:

근질권설정자 성 명: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결 재	담 당	부(팀) 장

제1조 근질권의 설정

채무자와 근질권설정자(이하“설정자”라 합니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 합니다)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채권·물권·유가증권 등(이하“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 절차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2. 담보한도액

금 원

3. 근질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질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 유선(녹취), 인터넷 등을 통한 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 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 유선(녹취), 인터넷 등을 통한 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 범위

- ① 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용한 적립금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담보목적물에 대한 보증채무 등에 미칩니다.
-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중액·감액 등을 한 때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3조 보험계약

-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합니다.
- ②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신하여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맺거나 계속하여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을 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그 수령금으로 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 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부담

- ① 채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근질권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이를 즉시 상환합니다.
- ② 채무자가 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설정자가 장래 이 계약과 별도로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7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권 행사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8조 특약사항	설정자 : (인)
-----------------	-----------

◆ 담보물건 목록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 2. 들었음)

1.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담 및 자필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장소 및 날짜	

◆ 담보제공자(근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질권이란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유가증권, 수익권 등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약정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그 담보물을 처분(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 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채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0년 0월 0일자 대출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이미 발생하여 현재 상환되지 않은 채무 포함)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장이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하므로 그 책임 범위가 큼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 담보제공자(근질권설정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동시에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로 제공(근질권 설정)한 재산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 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